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5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[도시디자인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도시디자인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본 조례의 설치 근거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폐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고,
-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. 4. 11일부터 5.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. 5. 18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설치 근거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었고,
-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외 세입·세출요인이 없는 등 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고,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하오니,
-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00023070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5. 26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도시디자인과장)

1. 제안이유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설치 근거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폐지(2008. 3. 28.) 등으로 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.
- 나. 기반시설특별회계 임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임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
- 다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4. 11. ~ 5. 1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2) 비용추계서: 비대상
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사항 없음
 - 5) 행정규제 심사결과: 해당사항 없음
 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결과: 원안 동의

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.

【관 계 법령】

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[시행 2008.3.28.]
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9051호, 2008.3.2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,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별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.

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, 제34조제1항제15호, 같은 조 제2항제3호, 제35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